

용인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용 인 시 의 회 의 장

2022년 1월 6일

용인시의회 규칙 제40호

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

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6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1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 중 “본회의에”를 “소관 상임위원회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의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입 안 자
의회운영위원회	김운봉 의원
	이미진 의원
	김희영 의원
	윤재영 의원
	전자영 의원
	하연자 의원
	황재욱 의원

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

□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(안 제1조)
- 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 규정 정비(안 제6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등 정비